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전기통신사업자 중대 사고 발생 시 산규모집 중단 및 위약금 면제 〉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170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전기통신사업자 중대 사고 발생 시 타 법에 따른 규제	3
2. 전기통신사업자 중대 사고 발생 시 신규모집 중단 및 위약금 면제 ..	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학영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4. 28.

다. 회부연월일 : 2025. 4.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SKT 유심정보 해킹 사고는 가입자 고유정보인 유심 정보를 탈취당한 중대한 사고였음에도 SKT는 인지 후 즉시 신고를 하지 않고 느장 대응한 것으로 드러나 이용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 실제로 지난주 SKT의 번호이동 가입자가 약 1,600명 순감한 것으로 드러났음.

디지털화로 인해 스마트폰은 단순히 전화, 문자 등을 위한 수단이 아닌 금융거래,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해 개인정보 관련 침해사고 발생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임.

그러나 이용자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침해사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이용자의 보호조치를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통신사업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침해사고를 금지행위에 포함시켜, 방통위가 원인조사 기간 등에 이용자 신규 모집을 중단하고, 이용자의 해지 요청 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제5호의4 및 제52조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전기통신사업자 중대 사고 발생 시 타 법에 따른 규제

○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동 법 이외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의 관련 규제가 예정되어 있음.

○ 구체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2의2.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 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2.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사유, 법적 근거, 제출시킨 또는 열람일시, 제출·열람할 자료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시작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사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계획을 알리지 아니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 타 법률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정보 유출 사고와 같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²⁾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

⑧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받거나 열람 또는 검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 자문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열람 및 검사 등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2. 침해사고의 예보·경보
3.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 대응조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해사고의 유형별 통계, 해당 정보통신망의 소통량 통계 및 접속경로별 이용 통계 등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3.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분석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터넷진흥원에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사고 발생 시 정보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제2의2호에 따르면,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러한 정보 제공 행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거부 시 관계인의 사업³⁾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3)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제26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수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9.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 다만,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9조(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타 법상 규정된 전기통신사업자 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 및 제재 >

법률	구분	조항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침해사고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제48조의2 (침해사고의 대응 등)	○ 침해사고의 유형별 통계, 해당 정보통신망의 소통량 통계 및 접속경로별 이용 통계 등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
	자료 제출	제64조 (자료의 제출 등)	○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 ○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 ○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령
	과태료	제76조 (과태료)	○ 자료의 열람·제출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등에 과태료 부과(3천만원 이하)
「개인정보 보호법」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3조제2항	○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3조제3항	○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과징금	제64조의2 (과징금)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 등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전체 매출액의 최대 3% 부과 가능)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5.

-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22호부터 제24호까지⁴⁾에 따르면, 이러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2.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3. 제6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제출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4. 제64조제3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의무 이행수단도 명시되어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5호 또는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등의 이유로 인해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제2항⁵⁾ 및 제24조제3항⁶⁾에서도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나 고유식별번호를 처리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②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③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전기통신사업자 중대 사고 발생 시 신규모집 중단 및 위약금 면제

최근 발생한 SKT 유심정보 해킹 사고와 같이, 이동통신사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의 사생활 정보 노출이나 금융정보 탈취 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의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 권익 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금지행위에 포함시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신규 모집을 중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계약 해지 요청 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손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5호의4 및 제52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제50조(금지행위) ① ----- ----- ----- ----- ----- ----- ----- -----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5의3. (생략)

<신설>

6. ~ 11. (생략)

②·③ (생략)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
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1. ~ 11. (생략)

<신설>

-----.

1. ~ 5의3. (현행과 같음)

5의4. 전기통신사업자의 명백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침해사
고 발생 행위

6. ~ 11.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
-----제50조제1항(제5
호의4는 제외한다)-----

-----.

-.

1. ~ 11. (현행과 같음)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
항제5호의4를 위반한 행위가 있
다고 인정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
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신규 모집 중지

2. 이용자 해지 요청 시 위약금
면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기간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와 감정인에 대한 감정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③ -----제1항 및 제2항-----

-----.

④ -----제1항 및 제2항-----

-----.

⑤ -----제4항-----

-----.

⑥ -----제1항 및 제2항-----

없이 제2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항----- ----- ----- -----.
⑥ 제5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6항----- ----- -----.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업의 일부 정지를 명하는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⑧ -----제6항----- ----- ----- -----.
⑧ (생략)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 검토사항

- 2025년 4월 19일에 SKT는 해커의 악성코드 공격으로 인하여 일부 고객의 유심(USIM⁷⁾) 관련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유심 고유 식별번호(IMSI⁸⁾),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IMEI⁹)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예측되었음¹⁰. SKT 정보 유출 사건 관련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고 조사를 위해 구성

7) 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USIM)

8)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IMSI)은 휴대폰 이용자의 고유한 식별번호로, 주로 기지국이나 통신망에서 사용자 인증에 사용됨.

9) 국제 이동통신 장비 식별번호 또는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IMEI)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의 1차 발표(2025. 4. 30.)에 따르면,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출은 없었다고 발표하였음.

된 민관합동조사단의 발표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는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IMSI) 등 USIM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4종과 USIM 정보 처리 등에 필요한 SKT 관리용 정보 21종이라고 밝힌 바 있음¹¹⁾.

○ 또한, 2차 발표에 따르면, 유출된 유심정보의 규모가 9.82GB이며, 가입자 식별키(IMSI) 기준 26,957,749건임을 확인하였으며, 약성코드는 1차 공지(4.25.)한 4종, 2차 공지(5.3.)한 8종 외 BPFDoor 계열 12종과 웹셀 1종을 추가로 확인하였다고 밝힌 바 있음¹²⁾.

○ 이러한 정보는 개인의 통화기록 유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며, 유출 시 이용자에게 중대한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보호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 SKT의 발표에 따르면, 알뜰폰 이용자까지 포함시 최대 2,400~2,500만명이 SKT 해킹 사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¹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사고 원인 및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SKT에 대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음¹⁴⁾.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출은 없었음과기정통부, SKT 침해사고 1차 조사결과 발표 -’, 2025. 4. 30.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SKT 침해사고 조사결과 2차 발표 -’, 2025. 5. 19.

13) 연합뉴스, ‘SKT 해킹에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당국 비상대책반 구성(종합2보)’, 2025. 4. 22., <https://www.yna.co.kr/view/AKR20250422035352017>

14) 한겨레, ‘SKT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 생겨…벌써 수천명 가입’, 2025. 4. 27.,

<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정리 >

통신사	시점	원인	유출규모
KT	2012년	내부 시스템의 보안취약점(관리 소홀) + 외부 해커 침입	870만명
	2013~2014년	인증단계 미비, 개인정보 전송 과정 암호화기술 미적용 등	982만명 (1,170만건)
LGU+	2023년	중국 해커 조직의 랜섬웨어 공격 + 구형 시스템 사용	약 30만명
SKT	2025년 4월	악성코드 감염 통한 내부 시스템 침투(현재 조사 중)	2,400~2,500만명 (조사중)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 동 개정안은 이동통신사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금지 행위에 추가하도록 하며(제50조제1항제5호의4), 방송통신위원회가 원인조사 기간 등에 이용자 신규 모집을 중단하도록 하고, 해당 이동통신사 이용자의 계약 해지 요청 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제52조제2항), 이동통신사의 중대 사고 발생 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에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정보 유출 사고 시, 부적절하게 정보를 취득한 자가 유출된

IMSI 및 IMEI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와 동일한 휴대폰을 복제할 경우, 이용자의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와 기업의 중요 기밀이 유출될 수 있으며 금융 인증, 각종 증명서 발급, 공과금 납부 등에서 요구되는 본인 인증 절차의 보안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음.

- 또한, 유출된 정보를 기반으로 신뢰를 유도한 후, 문자나 이메일로 악성 링크를 보내 사기 행위를 시도할 수 있어, 실제 범죄 행위로의 연결이 우려되는 측면도 있음.
 - 정보통신 시대에 이동통신사가 보유한 휴대폰 관련 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보 유출 사고는 이용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실질적 피해가 없더라도 상당한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어, 신규 가입자 모집의 중단이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면제와 같은 조치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동 개정안과 같이 위반 행위 발생 시 위약금 면제 조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법률에 규정될 경우, 유출된 이동통신사를 이용 중인 이용자의 사업자 변경이 보다 용이하게 되어,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용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 보안을 강화하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입법 취지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 특히, 전기통신사업자의 보안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절차를 통해 이용자의 피해를 보상받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약금 면제 조치는 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구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어, 이용자 권익 보호에 있어 더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평가될 수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신규 모집 중단 기간의 상한 설정 검토 필요

○ 첫째, 동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간의 상한 없이 신규 모집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조치의 적용 기간에 상한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위법 행위로 인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직 전기통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신규 가입자의 정보 유출 피해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따라서, 이러한 공익과 신규 가입자 중단으로 발생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및 영업점 등에 대

한 영업의 자유의 제한이라는 불이익 사이에서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그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조치 기간에 대한 상한이 없는 경우 정부의 조사 기간이 유출된 정보의 종류와 범위, 사고의 복잡성 등에 따라 원인 파악이 어려워 조사 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을 것임. 또한,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조치가 장기화 되면 전기통신사업자와 영업점 등에 대한 영업의 자유 침해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또한,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관련 내용을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의3제2항제7호¹⁵⁾에서 이용자 신규 모집 금지 기간의 상한을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할 때, 동 개정안에서도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신규 모집 중지 기간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 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고, 동시에 이용자 권익 보호와의 균형을 적절히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어느 정도의 신규 모집 금지 기간의 상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

15)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제3항·제5항, 제32조의14제1항·제3항·제5항 또는 제32조의15제2항·제3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7. **이용자의 신규 모집 금지(금지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는지는, 해당 조치를 규정한 다른 조항들과 동 개정안의 제재 사유가 가지는 중대성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현행법의 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제51조의3제2항 제7호)에 따른 신규모집 중단 사유를 살펴보면, 지원금의 차별 지급(제32조의12¹⁶⁾),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위반(제32조의14¹⁷⁾),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관련 표시 위반 등(제32조의15¹⁸⁾)으로 규정되어 있어, 판매점, 지원금 등 이동통신 가입

16)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2(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4(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①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으며,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아 판매점을 선임한 때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승낙의 거부, 지연, 철회 요건 및 기준을 정하여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며, 판매점이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목적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승낙을 거부하거나 지연, 철회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이 제3항에 따른 사전승낙 철회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해당 판매점의 사전승낙을 철회할 수 있다.

⑤ 판매점은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⑥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 및 판매점 현황에 관한 자료를 분기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8)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5(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여야 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할부판매하는 경우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부기간과 추가적으로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지원금, 지원금 지급 조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자 신규모집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신규모집을 중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법의 다른 조항들이 판매점 운영이나 지원금 지급 등과 같이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3개월 이내의 신규 모집 금지 명령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조치 역시 기존 제재 사유들과 그 중대성과 직접성을 비교·검토하여, 어느 정도의 제한 기간이 타당한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임.

□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괄적 위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필요

- 둘째, 동 개정안은 명백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제52조제2항제3호의 신설 규정에 따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침익적인 행정조치를 취함에 있어 그 기본적인 내용과 범위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포괄적 위임 금

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그 내용과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 시행령으로 위임함으로써 위임 입법의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등에 대한 지원제한에 관하여 규정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 중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2014헌가2, 2016. 3. 31.)¹⁹⁾에 따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원금 부정수령자에 대한 제재로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면서, 그 범위나 기간 등 기본적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인은 지급제한의 방식이나 기간, 반환 범위를 법률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어, 행정청의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하므로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

19)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위헌제청[2014헌가2, 2016. 3. 31.]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지원금의 부정수령자에 대한 제재의 목적으로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 제한에 대하여는 제한의 범위나 기간 등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도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채 이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그리하여 구 고용보험법의 목적과 규정내용,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취지, 지원금의 종류 및 내용 등을 체계적·유기적으로 종합하여 살펴보아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어떤 방식으로, 어느 기간이나 정도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지급이 제한되고 그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원받은 금액 중 얼마까지 반환하여야 하는지 그 대강의 내용을 법률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을 부정수령한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제한기간 및 반환의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채 이를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 ‘침해사고 발생 행위’의 문구의 명확한 수정 필요

○ 셋째, 동 개정안의 금지행위로 규정된 ‘전기통신사업자의 명백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침해사고 발생 행위(안 제50조제1항제5의4호)’의 문구에서 어떠한 부분에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음.

- 동 개정안의 표현에서는 어떠한 부분에 침해사고가 발생했는지 명확하지 않아, 「전기통신사업법」의 다른 조항에서의 침해사고 규정을 참고하여 법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2항제2호²⁰⁾와 제22조의5제3항제2호²¹⁾에서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²²⁾에서 ‘침해사고’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20)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②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사기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③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사기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침해사고”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점도 감안하여, 해당 규정을 사용할 필요도 있다고 보임.

□ 중소 부가통신사업자의 규제 대상 제외 검토 필요

- 넷째, 동 개정안은 매출액 등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금지행위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사 등 대형 기간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중소 모바일 앱 개발사 등이 포함된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하고 있어, 이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금지행위 적용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출액 등 일정 기준 이하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4제1항²³⁾에 따르면 문자메시지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요금 신고 의무가 부과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장 상황,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일정 매출액 미

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

2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4(요금신고가 필요한 부가통신서비스) 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조제14호나목의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서비스의 요금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가통신서비스 매출액이 시장상황,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전기통신사업자는 제외한다.

만의 사업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동 개정안에서도 매출액 등 일정 기준 이하의 부가통신사업자는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금지행위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 금지행위 규정 내용의 수정 필요

- 다섯째, 동 개정안은 금지행위를 ‘전기통신사업자의 명백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침해사고 발생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해커 등 제3자의 불법적인 행위로 발생하므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를 ‘침해사고 발생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등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 해커 등의 침해사고 발생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데 있다고 볼 필요가 있어, 해당 부분을 감안하여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못하여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 금지행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동 개정안의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개정안 제50조 제1항제5호의4 부분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포함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법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의 다소 불명확한 내용을 다음 내용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동 개정안의 경우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적용할 실익이 적으며, 그간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사례²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적용 대상을 기간통신사업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 상 ‘침해사고’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침해사고 정의 규정을 원용하여 침해사고의 의미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고, ‘명백하거나 중대한 과실’을 타 입법례와 같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정하여 법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음.

- 또한, 침해사고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직접 행위가 아닌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하므로, 침해행위로 인한 위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개정안의 제52조제2항 신설 부분에 대해

24)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 사례 중 신규 모집 금지 조치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적용한 사례 (예 : SKT 단말기 보조금 관련 시정조치, 제2012-70-302호)는 있으나, 부가 통신사업자에게 적용한 사례는 없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음.

서는 추가적인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개정안 내용은 사업자의 경영 자율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치명령 시 다양하게 고려할 사항²⁵⁾을 법률에 규정하여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필요 최소한의 적절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

- 동 개정안의 이해관계자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최근 발생한 SKT 유심정보 해킹 사고에 집중하고 있는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적용대상을 “기간통신사업자”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침해사고 발생은 행위가 아닌 상태에 불과하여 현행 법 상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침해사고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사업자의 자유를 침해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임.
- 동 개정안의 이해관계자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동 개정안의 신설 금지행위는 이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규율하고 있고, 신규모집 중지 및 위약금 면제 조치는 회사 존폐와 관련된 중대한 처분으로 중대한 과실 등의 유무를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

25)방송통신위원회는 침해사고로 발생한 이용자 피해정도, 피해구제 노력정도, 추가적인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동 개정안의 이해관계자인 SK텔레콤은 침해사고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의 법률간 체계 정합성에 반하고, 이를 금지행위로 규율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존 금지행위 체계와 부적합하고, 개정안의 시정조치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 아니며,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등²⁶⁾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
- 동 개정안의 이해관계자인 KT는 동 개정안의 사업자의 책임범위가 불명확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과의 중복 규제 문제가 발생하고 신규모집 중지시 부작용²⁷⁾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침해행위로 인한 사업자 책임은 위약금이 아닌 손해배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
- 동 개정안의 이해관계자인 LG유플러스는 침해사고의 행위주체는 해커 등 제3자이므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규율하는 것은 체계 정당성 원리에 위배되며, ‘명백하거나 중대한 과실’의 의미가 모호하고, 동 개정안의 시정조치 내용은 재발

26)SK텔레콤에 따르면, 이용자 간 다른 수준의 위약금 면제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며,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약금 면제시 이용자의 모럴해저드 발생이 우려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

27)KT는 유통망·종사자 영업 중단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

방지와 관련이 없는 등 비례원칙 위반 소지가 있으며, 사업자의 경쟁 제한 및 투자위축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

- 종합하면, 동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사고 시 이용자 모집 중단 및 위약금 면제 등으로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중소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제외하여 적용하고 금지행위 규정 내용을 법체계에 맞게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소관 부처의 법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정 내용, 이해관계자의 타 법의 규제와 중복 우려나 비례원칙 위반, 신규 모집 중지의 경우 회사 존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사법부에서 판단 필요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인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225